

##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1. 화순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4. 2. 3.

다. 상정일자 : 2004. 2. 3.

(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### 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조규문

#### 나. 제안사유

- 장학생 추천절차를 간소화하고, 대학생 장학생 신청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한정된 선발인원과 신청자 수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탄력 학생과 학부모들의 실망감, 시간적 낭비 등의 선발에 따른 휴유증을 최소화하고,
- 세부적인 절차 및 내용이 열거된 조문은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에 규정, 중복 또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및 규칙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

#### 다. 주요내용

- 제1조 조례 운영 목적중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자 위주로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'경제적 사정' 삭제 인재
- 제12조 대학생 장학생의 신청자격 요건을 B학점 이상에서 A학점(4.5만점기준)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, 장학생 신청자격과 관계 없는 제3항 '4년제 이상의 각 대학 입학시험에서 전체 또는 단과대학 수석을 하여 군의 명예를 높인 자에 대하여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' 삭제

- 제13조 군 관할구역내 고등학교 장학생 추천절차 간소화 및 조건 부여
  - 현 행 : 교장 → 읍면장 → 군수
  - 개정안 : 교장 → 군수
  - 성적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추천
- 제18조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구체화
  - 현 행 :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
  - 개정안 : 장학생이 품행이나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학교장의 정지요청이 있을 때, 대학생은 장학금 지급 기준학기 평균성적이 B+학점 미만일 때
- 제21조 운용기금중 장학금과 직접 관련이 없는 '1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장학생에 대한 위문금' 삭제
- 별지 장학금 신청서 및 추천서식 삭제
  - 향후 규칙에 규정
- 기타 문구 수정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 헌 범)

-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절차상, 법규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 그러나 개정안 제7조제3항중에 현재 군의원이 화순군장학진흥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며,
- 개정안 14조제1항과 제15조중에 장학생 선발인원 책정의 기준을 다양화할 수 있는 여지를 줄 필요와 함께 선발인원의 배정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.

### 4. 결의 답변 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“수정의 결”

첨 부 :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## 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장학진흥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7조(구성) ③위원은 군, 교육청, 경찰서의 간부와 군의회 그리고 사회단체, 직능 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중에서 장학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.

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추천) ①군 관할구역내 고등학교 학생은 학교별로 재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장학생 선발인원을 배정하고, 그 범위안에서 각 학교장이 성적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.

제15조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(선발)장학생은 당해연도 운용기금 범위안에서 선발하되 추천자중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. 단, 군 관할구역내의 고등학교 장학생 선발인원은 재적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형평을 유지하도록 한다.

### 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제7조(구성) ①~②(생략) ③위원은 군, 교육청, 경찰서의 간부와 사회단체, 직능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중에서 장학진흥을 위하여 현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.	제7조(구성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위원은 군, 교육청, 경찰서의 간부와 군의회 그리고 사회단체, 직능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중에서 장학진흥을 위하여 현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.
제14조(추천) ①군 관할구역내 고등학교 학생은 학교별로 배정된 학생은 선발인원 범위내에서 각 학교장이 성적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.	제14조(추천) ①군 관할구역내 고등학교 학생은 학교별로 재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장학생 선발인원을 배정하고, 그 범위안에서 각 학교장이 성적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.
제15조(선발) 장학생은 당해연도 운용기금 범위안에서 선발하되 추천자중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. 단, 군 관할내의 고등학교 장학생 선발인원은 재적 학생수 기준으로 형평을 유지하도록 한다.	제15조(선발) 장학생은 당해연도 운용기금 범위안에서 선발하되 추천자중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다. 단, 군 관할구역내의 고등학교 장학생 선발인원은 재적 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형평을 유지하도록 한다.